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윤 석 열 인

2023년 10월 31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
기 획 재 정 부
장 추 경 호

● 대통령령 제33832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“2023년 10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‘2023년 10월 31일까지’에서 ‘2023년 12월 31일까지’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